인성관련 벌점기준표(제58조 제1항 관련)

구분		위 반 내 용	벌 점 (공통)
중요 규율 위반	법령 위반	폭력(피해자 처벌의사 有), 성범죄, 성매매, 절도, 도박, 손괴,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 등), 무고, 공문서 위변조 등 불법행위	40
		고의 또는 중과실로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하여 물의 야기 또는 교육원의 명예를 심히 훼손한 경우	40
		음주운전(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포함)	40
		정부 감염병 방역 관리 예방 행정명령 위반	20
		교육기간 중 알게된 직무상 비밀누설 행위	20
		법령위반에 따른 수사기관 사건 접수 및 진행사항 등 보고 결락	30
		타 기관 출석요구(피의자, 참고인 등) 통보에 따른 보고 결락	20
	성(性) 관련	동료 간·제3자에 대한 성희롱 (「양성평등기본법」의 성희롱에 국한하지 않음)	40
		교육원 내 성행위(유사 성행위 포함)	40
		부적절한 업소 출입(성매매업소, 불법 안마업소 등)	40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0
		성적 의도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	20
		공공장소에서 음란물(동영상, 사진, 도서 등)을 보는 행위	20
		교제 및 친교 거부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연락, 접근, 따라다니는 행위	20
	음주 관련	음주 후 폭력, 소란 등 각종 행위로 물의 야기 또는 학교 명예훼손	40
		음주 후 시비, 욕설, 소란, 추태 또는 지시 불응	20
		교육원 내 주류 반입 및 음주행위	20
		교육원 내·외에서 음주 후 폭력, 추태 등 품위손상 행위	30
		외출·외박 복귀 후 음주로 인한 폭력, 추태 등 품위손상 행위	30
	내부 결속 저해	지도교수 또는 교직원에게 욕설, 모욕, 폭력 행사	40
		집단적·상습적 동료 간 허위사실 유포·따돌림(비난, 조롱, 비방)·괴롭힘 등 화합 저해 행위 또는 선동	40
		학생 신분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행위, 물의 야기 또는 이에 준하여 교육원의 명예를 심히 훼손하는 행위	40
		교육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과음 (횡설수설, 똑바로 서 있지 못하는 경우 등)	10
		학생 상호 간 또는 일방적 폭력행위 등 물리력 행사	30
		학생 또는 직원에 대한 비방, 험담, 명예훼손, 유언비어 생산, 전달, 유포행위	30
		타인에게 욕설하거나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	20
		물리력을 동반하지 않는 싸움, 소란행위(말싸움, 위협 등 포함)	20
		특정인에 대한 따돌림, 괴롭힘, 이간질 및 불이익을 주기 위한 각종 거짓 신고	20
	기타	타인의 물건을 무단 사용, 타인의 음식을 무단 취식	10
		중요규율 위반행위를 한 학생과 동석한 자는 행위자 위반행위 벌점의 1/2 부과	-

구분	위 반 내 용	벌 점 (공통)
예 절	거짓 보고, 보고 의무사항 미보고	5
	상급자에게 경례 미실시	2
수업 태도	그 밖의 학과 수업 교수요원의 정당한 지시사항 위반	5
휴가	특별휴가, 청원휴가 거짓 실시(거짓 보고 시 1일당 5점 병과)	10
정보통신망 사용	정보통신망 이용 타인 비방 또는 유언비어 생산・전파・유포행위	30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 동영상, 음성 등 영상 매체를 촬영, 녹화, 녹음, 저장, 유포하는 행위	20
	교육원, 교직원, 학생의 명예, 품위, 권리 침해 우려가 있는 각종 행사 및 교육 관련 내용을 게시, 유포, 열람, 저장하는 행위(사진, 동영상, 음성 등 매체 포함)	20
질 서	생활관 내 흡연, 실내・외 보행 중 흡연(전자담배 포함)	10
	정문 출입 시 신원확인 불응	5
	강의실, 실습장, 구내식당, 생활관 등 정숙을 해야 하는 장소에서 타인에게 피해 주는 행위	3
	그 밖의 타인 생활 방해행위(취침 방해, 학습방해, 게임 행위 등)	3

※ 생활규칙을 위반하여 벌점을 받은 경우 상점으로 상계되지 아니한다.

※ 학생은 법령위반 등의 경우로 수사기관에 수사 진행 시 해당내용을 지체 없이 교육원에 보고해야 하며, 해당 수사기관의 결과(입건 및 송치 결과 등)을 참조하여 벌점을 부과 할 수 있다.

※ 단, 법령위반 등의 행위가 불송치 등으로 수사 종결된 경우에는 벌점 부여를 소급하여 취소 할 수 있다.